

Korean Tax Update

March 2018, Issue 45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개정이유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 기간 및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상향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 6 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 년간 75 퍼센트, 그 이후 2 년간 50 퍼센트에서 5 년간 100 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규로 적용하는 한편,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하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 년간 수입금액이 4,800 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창업한 지역과 관계없이 100 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 등(안 제 29 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2 년에서 3 년으로, 그 외 일반기업은 현행 1 년에서 2 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공제금액을 각각 500 만원씩 상향 조정함.

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안 제 30 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는 현행 취업일부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 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부터 5 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100 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함.

라. 지역특구에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 상향(안 제 12 조의 2, 안 제 121 조의 8, 안 제 121 조의 9, 안 제 121 조의 17, 안 제 121 조의 20, 안 제 121 조의 21, 안 제 121 조의 22)

연구개발특구 등에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한도 계산시 상시근로자 고용 1 인당 감면한도를 현행 1,000 만원에서 청년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1 인당 2,00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 104 조의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안 100 조의 3)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연령요건(현행 30 세 이상)을 폐지함.

기획재정부, 「2018 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정부는 '18.3.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 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18 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① 2017 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 ✓ '17 년 국세감면액(추정)은 38.7 조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 감면율*은 하락 추세
 - * 국세감면율(%) : ('14)14.3, ('15)14.1 ('16)13.4, ('17 추정)12.7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 '17 년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였고,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함**
 - * R&D 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축소 등
 - **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증가·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등 지원 확대

- ② 2018 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
 - ✓ (엄격한 조세지출 운영)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 ✓ (성과평가 강화) '18 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 ✓ (성과관리 체계 개선) 예타·심층평가시 고용영향평가 실시,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 개발 등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 ✓ (분야별 운영방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현행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기획재정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강화 [보도자료]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월 20일(화) 국회에서 통과됨.

-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음.
- 이번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자 본인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함.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할 계획임.
 - ✓ 민법 제 779 조제 1 항에 따른 물납자의 가족*
 - * 민법 제 779 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법인의 경우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 779 조제 1 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예규·판례]

[판례 1]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 두 63887 판결

- 법인세법 제 52 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기부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움.

[판례 2] 한·중 조세조약 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원천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직접 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인 이 사건 세액은 법인세법 제 57 조 제 3 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 두 59727 판결

- 한·중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인 총배당액의 10%보다 낮은 5%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중 조세조약 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이하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그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제세율을 간주함으로써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중 조세조약 체결국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대상과 시한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률에서 거주지국 투자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한·중 조세조약 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3]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 두 55329 판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는 우리나라가 그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만일 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된다고 할 것임.

[심판례 1]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임

조심 2017 서 3860, 2018. 3. 5.

- ①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거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② 대표이사 가지금금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내역은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계처리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례 2] 대리점 영업사원의 영업기술 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위탁 교육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7 서 3717, 2018. 3. 2.

- 위탁교육대상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각 대리점의 영업사원이고, 교육내용이 신기술 보다는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육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예규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 3. 22.

-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4 호 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5 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조 제 6 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예규 2]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 2. 21.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7. 9. 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예규 3]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예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 2. 21.

-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1 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4]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 56 조 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 2. 13.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56 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예규 5]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2018. 2. 13.

- ①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② 내국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예규 6]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 2018. 1. 31.

-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 18 조 제 6 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